

고 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시 제 2017 - 78 호

주택재건축사업 사업변경인가
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4길 19(대치동 963번지)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6. 9.

강 남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강남구 역삼로84길 19(대치동 963번지) 일대
4. 정비구역의 면적 : 29,532.20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고광필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강남구 삼성로 336, 한림빌딩 5층
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0개월
8. 사업변경인가일 : 2017. 6. 1.
9. 사업개요

가. 대지면적 : 21,442.80㎡	나. 건 폐 율 : 25.18%
다. 용 적 륜 : 237.41%	라. 높 이 : 54.00m
마. 용 도 : 공동주택 9개동(489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	
바. 규 모 : 지하2층 ~ 지상18층, 연면적 81,984.7573㎡	
10.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(기부채납) 대상

종 류	규 모(㎡)	시 행 자	비 고
도 로	2,968.60	조 합	-
근린광장	3,739.10	조 합	-
소 공 원	1,381.70	조 합	-
합 계	8,089.40		-

1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 사항

- 「주택법」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-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

12.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(☎02-3423-6072)에 비치 보관